

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보건의료정책과장: 천주환 ☎ 2133-7505 환경보건팀장: 김미순 ☎ 7676 담 당: 백지현 ☎ 7678
식품정책과장: 경자인 ☎ 2133-4701 식품안전팀장: 차원경 ☎ 4730 담 당: 황주오 ☎ 4732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1.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개선 건의 (보건의료정책과, '26.4.24.)	☐ 현 황 ○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- 객실 내 침상 구조 및 숙박 인원 에 대한 별도 기준 부재 ☐ 문제점 ○ 밀집도가 높은 숙박업소(캡슐형)에 대한 법적·제도적 관리 근거 미흡 - 화재 발생 시 숙박인원 과밀로 인한 좁은 객실·복도 등 피난통로 병목 현상으로 대피 지연 우려 ☐ 건의내용 ○ 숙박객 수 대비 최소 공간 확보 기준 등 객실 밀집도 관련 규정 신설 - 밀집도 및 위생관리 위해 객실면적 대비 침상 수, 1인당 최소 점유면적 기준 마련 ☐ 관련 규정 ○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	보건복지부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
2. 식품 및 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 공개 방식 개선 요청 (식품정책과, '26. 4. 1.)	□ 현 황 ○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, ○ 품목제조보고를 관할 관청에서 승인할 경우, 식품안전나라 및 식약처 공공데이터(APD)를 통해 제품 정보(제품명, 식품유형, 원재료, 성분명, 등록일자 등)가 즉시 공개됨 □ 문제점 ○ 업체에서 사전 물량 확보 등의 이유로 실제 정식 출시일보다 상당 기간 앞서 품목제조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음 ○ 이에 제품 출시 이전 단계에서 신제품 관련 정보가 경쟁 업체에 쉽게 노출되는 등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으며, 이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○ 품목제조보고 정보 공개는 소비자 정보 제공 및 식품안전 확보가 그 목적인바, 제품 출시 이전 단계에서는 제품 정보 공개 필요성이 낮으므로 품목제조보고 정보 공개 시점 및 공개되는 정보 항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함 □ 건의내용 ○ 업체에서 품목제조보고 시 관련 정보 공개 유예기간을 설정 가능토록 변경 ○ 품목제조보고된 식품 검색 시 영업 비밀을 노출할 수 있는 항목(등록일자 등)은 비공개 □ 관련 규정 ○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제6항	식품의약품안전처